

# 대학발전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8. 06. 26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기획실(950-5424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의 임기)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	제6조(규정심의절차)	제7조(회의록)	제8조(시행세칙)

**제1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한국성서대학교의 효율적인 발전과 건학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기획에 관한 사항
  - 1. 장,단기 사업계획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연구, 교육 및 시설 등에 관한 기본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  - 3. 제 기구, 학제, 직제 등의 조직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대외협력 관계 체결 및 학술 교류
  - 5. 홍보에 관한 사항
- ② 규정에 관한 사항
  - 1. 각종 규정의 제정(안)과 개정 및 폐지(안)의 심의
  - 2. 각종 규정과 관련된 조사연구
- ③ 홍보에 관한 사항
  - 1. 홍보자료 수집, 분석 및 활용
  - 2.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
  - 3. 교수 연구활동 홍보
  - 4. 교수 및 학생의 대 내외활동 홍보
  - 5. 각종 대내외 학술회의 홍보
  - 6. 교수 해외 학술 교류
  - 7. 장학제도 홍보
  - 8. 각종 교육, 연구시설물 홍보
  - 9. 홍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④ 대학 역사에 관한 사항

⑤ 그 외 학교발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규정심의절차)** ① 위원회는 처, 실, 팀 또는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의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/3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시행세칙)** 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